##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1 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최기상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 · 소병철 · 송기헌

신동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"을 "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범죄인의 인도) ① ~ ③	제4조(범죄인의 인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	4
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	
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	
는 검사 또는 <u>「형사소송법」</u>	「형사소송법」
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	제197조제1항
관(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	
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	
한 법률」 제5조제18호에 따른	
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	
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
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	
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	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법경	l
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	
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	
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	
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